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5일, 고성미·도병두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년 11월 24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고성미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대의기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의회의 위상 확립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운영 등과 관련한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2조)
- 의회의 기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20조)

- 의원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제28조)
- 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 제48조)
-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사항(안 제49조 ~ 제55조)
- 질서와 경호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 제60조)
- 의원연구활동 등에 관한 사항(안 제61조 ~ 제6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김하영

나.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현재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정비하고, 기본 조례에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장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는 연간 회의 일수, 회기, 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안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3장 의회의 기관 등(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는 의장의 직무, 의장 및 부의장 관련 사항과 의회에 사무국을 두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4장 의원(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는 의원의 청가 및 결석, 의원의 사직, 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5장 위원회와 위원(안 제29조부터 제48조까지)에서는 위원회와 위원, 전문위원과 공무원 및 전문가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등(안 제49조부터 제 55조까지)에서는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및 발언과 구정질문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7장 질서와 경호(안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에서는 의회의 경호 및 회의 질서유지, 방청 및 녹음 · 녹화 · 촬영 ·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장 의원연구활동 등(안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서는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등의 폐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본 안건은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별 조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조항 등을 기본 조례안에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반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간결·명확하게 정비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타당한 안건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